

캐비아 원료 화장품 수출허가를 위한 안내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개요

○ CITES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CITES종 수출·입국이 상호협력·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Co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f Flora)
- 우리나라는 '93. 7. 9 협약(현재 180개국 가입) 가입, '93. 10. 7일 협약 발효

○ 관련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CAVIAR 원료 화장품 수출·입 허가 개요

○ 관련 근거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19-224호)

○ (재)수출허가 시 필요서류

- ① CITES 허가신청서(영어로 기재)
- ② 수입국에서 발행한 CITES 수입허가서 - 부속서 1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자료>

- ③ 적법하게 포획(채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인공재배확인서(농업기술센터)
 - * 수입 시 발급받았던 CITES 수입허가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 ④ 상품사진
- ⑤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 ⑥ 행정수수료

○ (재)수출허가 시 허가신청 절차

- ① 인터넷 포털에 한강유역환경청 검색
- ②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원 가입
- ③ 로그인 후 홈페이지 좌측 상단 전자민원 -> 서식민원신청
- ④ 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승인 신청
- ⑤ 지방환경청 선택 후 신청
- ⑥ 신청민원 정보, 신청인 정보 기재 후 다음 선택
- ⑦ 신청구분 선택 -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중 1 선택
- ⑧ 각 신청서별 세부 내용 입력
 - * (재)수출 시 신청자 및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도 영문으로 입력
 - * 수입 시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 영문으로 입력
- ⑨ 당해 동·식물 내역 입력
- ⑩ 첨부파일란에 필요서류 첨부 후 민원 신청

○ 벌칙 및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벌칙))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또는 반입한 자(법 제16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벌칙))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법 제16조제1항 위반)

- 몰수(법 제71조)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16조 위반)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16조 위반)

□ 안내 사항

○ 자주 묻는 민원 질의 및 간단 답변 내용

- 수출·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예.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는 교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 수출과 재수출의 차이는 뭔가요?

→ 우리나라에서 증식된 개체가 나갈 때는 수출로, 해당성분인 캐비어를 예로 들자면 캐비어가 우리나라에서 인공증식되어 화장품의 원료가 되어 수출이 되면 수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캐비어로 수출을 하시면 재수출이 됩니다.

- 민원 신청 시 영어로는 주소검색이 안 돼요.

→ 현재 한강청에서 신청하시는 민원 포털 양식은 통합민원 양식으로 영문주소 검색은 불가능하며 우편번호 검색은 하지 마시고 주소란에 직접 영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증식된 개체라는 걸 증빙할 서류는 뭔가요.

→ 캐비어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5. 27.>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허가신청서 []수입 []반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자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출자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생물 명세	⑪ 보통명	⑫ 학명
	⑬ 원산지(표본)	⑭ 생산지(제품)
	⑮ 해당 부속서 [] I급 [] II급 [] III급	⑯ 용도
	⑰ 명세(규격)	
	⑱ 선적항	⑲ 도착항
	⑳ 품목번호(HS)	㉑ 수량(단위)
	㉒ 단가	㉓ 금액
	㉔ 수출·반출·수입·반입예정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10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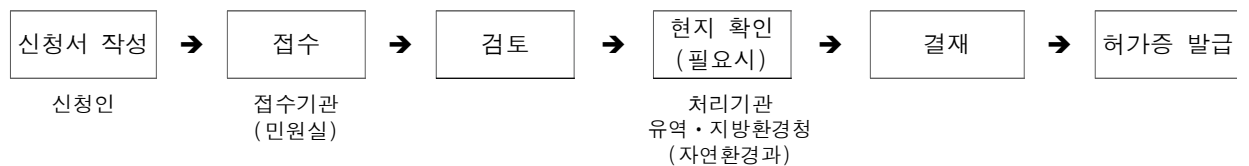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④란, ⑦란 및 ⑩란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2. ⑪란부터 ⑮란까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표본)의 생장지를, ⑭란은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생산지를 적습니다.
4. ⑯란은 용도를 세분하여 적습니다(예: 수입의 경우 - 가공 후 수출용, 국내 판매용 등, 수출의 경우 - 견본, 기증, 무역거래 등).
5. ⑰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성별·크기 및 생물(生物)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해당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자료>

[별지 제36호의2서식]

사 용 계 획 서					
신청인	①상호(명 칭)		실수요자	④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⑤성명(대표자)	
	③사업장소재지 (전 화)			⑥사업장 소재지 (전 화)	
⑦품 목			⑧사 용 목 적		
⑨ 세부사용계획					

[별표 9] <개정 2015.3.25.>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수입·반입하는 경우	수출·반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동물	살아있는 표본		10만원	10만원
		죽은 표본	100개 이상	5만원	5만원
			100개 미만	2만원	2만원
	식물	3,000개 이상		5만원	5만원
		3,000개 미만		2만원	2만원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법 제16조의2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0만원
법 제16조의2 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5만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2만원